#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56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인요한 · 권영세 · 권영진

이인선 • 조승환 • 성일종

구자근 • 박준태 • 최수진

우재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출입하는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도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 법률 제 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	
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	
다.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
	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u>&lt;신 설&gt;</u>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5
	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u>&lt;신 설&gt;</u>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u>시설</u>
<u>&lt;신 설&gt;</u>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u>&lt;신 설&gt;</u>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통시장
<u> &lt;신 설&gt;</u>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영유아보육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u>&lt;신 설&gt;</u>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u>7.</u> (생 략)	<u>14.</u>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